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1/1 통권 170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우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은?
-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2025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 공제 적용 가능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부담금의 유형과 계산>

부과대상	해당액 계산방법, 과세이유, 부담주체
주민세 종업원분	월급여총액×0.5%(종업원 50인 이하는 면세), 지급사업주가 부담
근로소득세	총 근로소득 - 소득공제 금액에 대하여 다단계누진세율(6%~45%) 적용함. 약 50% 근로자가 면세점이하임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최종납부세액의 10% 해당액(세율 0.6%~4.5%), 소득자부담
건강보험료	총급여액×7.09%(50% 본인, 50% 고용주부담) (근로자의 실의료비 해당액의 약 50% 충당목적)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의 0.9182%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12~13% 내외 적용함
국민연금보험	총급여액×9% 중 50% 본인, 나머지 50%는 고용주 부담, 은퇴후 국민연금 매달 수혜
고용보험료	급여의 1.8%(근로자 50% 부담, 사업주 50%), 근로자 실직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취업알선자금
산재보험료	광업(5.76%), 건설업(3.56%)로 높고, 기타의 사업은 급여×(0.66%~0.96%),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보상, 고용사업주가 전액 부담
노조회비	각 직장의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천차만별(급여의 약 1~3% 내외임), 노조회계 투명공시시 기부금 비용인정혜택
퇴직연금	종속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적용(퇴직금은 연봉의 10% 내외 적립,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외부적립 후, 실제 최종 퇴직시 퇴직금 수령함)
총 합계	공과금 22% + 근로소득정산 중소기업세율 평균 약 20% + 퇴직금 적립율 10% = 평균 최소 52% 내외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8호 / 주간 1호

2025. 1. 1.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 부담금의 유형과 계산	표지
CEO의 경영산책	우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은?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급여공제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하도급 위반 매출대금 지연 이자 - 스크랩 전용계좌 관련 문의 - 당사로 고지된 수도요금을 임차인에게 수도요금 청구서 계산서 발행 의무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어떤 연도의 소득으로 반영될까?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국회 문턱에 걸린 밸류업 세제혜택 법안 -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의 범위	9 10
직장인 Survival	직장에서 단단한 관계 만드는 법 ①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상속증여-636, 2023.12.26) -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881, 2024.06.26)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한달 앞 다가온 13월의 월급... 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주거 공제 쏠쏠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공제 적용 가능함	12
세무정보	- 여행사, 스테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15 26
회계정보	-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2025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8 39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7

우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은?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CEO가 처음으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할 때 갖게 되는 질문은 “현재 우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물음일 것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성숙도 평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흔히 리스크 관리 환경에 대한 진단을 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영층과 직원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수준, 조직에 내재된 리스크의 종류와 심각성, 리스크 통제활동 수준 등을 조사한 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 리스크 관리의 성숙도 평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파악함에 있어서 <표 1>은 영국 및 아일랜드 감사협회(IIA UK & Ireland)에서 정한 리스크 관리 성숙도 평가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성숙도를 초보(risk naive), 인식(risk aware), 정의(risk defined), 관리(risk managed), 강화(risk enabled)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초보 단계(risk naive) 단계는 경영층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조직의 목표 설정에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없는 환경이다. 리스크 선호도나 리스크 관리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인식 단계(risk aware)에서는 경영층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해를 갖고 있으나 단편적이거나 제한될 수 있다.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리스크를 고려하나 조직 전체적인 일관성이 취약하다. 리스크 관리가 일부 부문에 독립 분산되어 수행된다.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인프라 (예: 리스크 관리절차, 리스크 선호와 평점, 리스크 모니터링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다. 신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지 않는다. 리스크 정의(risk defined)단계는 리스크 관리전략과 정책 수립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 경영층이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갖고 조직의 목표 설정에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리스크 선호도와 평가시스템은 체계화되어 있으나 리스크 관리절차와 리스크 대응,

리스크 모니터링 등이 전체 조직에 적용되지 않는 환경이다. 리스크 관리(risk managed) 단계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정보가 공유된다. 전사적 관점에서 목표 설정 및 리스크 선호도, 리스크 평가가 중시되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수행된다. 책임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체평가(risk self-assessment)는 일부 관리자에 의해 적용된다. 리스크 강화(risk enabled) 단계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이다. 경영층이 전사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체계적인 리스크 선호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설정에 리스크를 평가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요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리스크 관리 절차와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전사적으로 적용되며, 조직적인 리스크 대응 및 모니터링이 수행된다. 각 책임자에 의한 RCSA(Risk Control Self Assessment)가 수행되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feedback된다. 리스크 관리 성숙도 모형의 접근법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성숙도 곡선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기업에 예측대로 진행되어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의 필요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표 1 영국 및 아일랜드 감사협회(IIA UK & Ireland)에 리스크 관리의 성숙도: 예시

리스크 관리 성숙도	초보 : 모름 (risk naive)	인식 (risk aware)	정의 (risk defined)	관리(risk managed)	강화(risk enabled)	체크포인트
<핵심 특징>	공식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없음	독립 분산된 리스크 관리시스템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정책 수립, 정보 공유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조직 목표의 설정	possibly	Yes (일관성 없음)	Yes	Yes	Yes	조직 목표가 설정되고 전직원이 공유하며 다른 목표가 최종 목표와 일관성이 있는가?
경영층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	No	일부 제한적 훈련	Yes	Yes	Yes	경영층과의 면담을 통해 리스크 인식도를 확인
리스크 평가 시스템	No		Yes	Yes	Yes	리스크 평가시스템에 대한 확인

리스크 선호도 (appetite) 설정	No	No	Yes	Yes	Yes	리스크 선호도 설정 및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확인
리스크관리 절차가 갖추어져 있음	No	Unlikely	Yes(전체 조직에 적용되지는 않음)	Yes	Yes	모든 리스크가 인식되는지 확인
리스크평점 산출	No	일부 불완전한 자료 있음	Yes(전체 조직에 적용되지는 않음)	Yes	Yes	리스크등록부 확인 및 주기적 검토 여부 확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	No	일부 대응	Yes(전체 조직에 적용되지는 않음)	Yes	Yes	리스크 선호도 설정 및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확인
모니터링	No	약간	Yes(전체 조직에 적용되지는 않음)	Yes	Yes	
신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	No	No	대부분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	
각 책임자의 리스크 관리 자체평가	No	No	No	일부 책임자	Yes	
리스크 관리 정책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건의 종전 감사방법	조직 전체적 리스크 관리 건의 종전의 감사방법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사실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사실시	

● 경영층의 리스크 관리 인식과 성숙도

리스크 관리 도입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최고경영층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시작 단계에서 최고경영층을 면담하여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만일 그 조직의 리스크 관리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 관리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경영층 및 직원에 대한 리스크 교육부터 시작하게 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성이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급여공제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Q 기관의 A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번 달 급여 중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당사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받음)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어야 하는지요?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예시) 세전 급여 800, 각종 공제금 100, 실지급 700

1) 인건비 800 / 각종 공제예수금 100

/ 현금 300

/ 일시예치금 400(부당이득 반환 공제분) : 결산 시 잡수입 처리

2) 인건비 400 / 각종 공제예수금 100

/ 현금 300

: 인건비 자체를 1/2 감액하는 방법

A 급여를 반환받는다는데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원래 급여가 아닌데 과다하게 지급되어 반환받는 것이라면 인건비자체를 감액하여 차감처리하는 2안이 타당한 처리방법입니다.

하도급 위반 매출대금 지연 이자

Q 하도급 조사로 인해서 고객으로부터 매출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급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하도급조사 대상은 2021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32백만원이고 이를 영업외손익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절한 계정이 있는지요?

혹시나 USGAAP 회계처리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A 매출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수령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스크랩 전용계좌 관련 문의

Q 거래처에서 철 스크랩 거래 보증금을 스크랩 전용계좌로 반환 요청하였습니다. 스크랩 전용계좌를 고철 대금 결제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스크랩 전용계좌의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가급적 스크랩 거래 전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로 고지된 수도요금을 임차인에게 수도요금 청구시 계산서 발행의무

Q 지자체에 납부하는 상하수도요금은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하수도가 당사에 고지서만 발행(계산서는미발행)한 상태에서 당사가 임차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일부배부)을 청구할때 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되는지요? 또는 발행해주어야만 하는지요? (임차인은 계산서 발급을 요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상하수도요금 등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귀사)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급해 주면 됩니다.

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어떤 연도의 소득으로 반영될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직전연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연도 연초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시켜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연초에 지급된 성과급이 어떤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당장의 전연도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데,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과급의 실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성과급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많은 실무자들이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해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떠한 지급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성과급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성과급이라고 판단하여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명목상으로는 동일한 성과급이라도 어떤 지급규정 및 지급절차, 성과산정지표 등에 의해 지급되는지에 따라 그 귀속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회사의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과 잉여금처분과 상관없이 일반 상여금처럼 지급되는 것으로 구분되며, 일반 상여금처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다시 그 성과측정을 계량적 요소로만 측정하여 지급하는 것과 계량적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성과급에 대해 귀속시기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해 성과급은 처분결의일

기업이 좋은 실적을 달성하여 잉여금처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즉,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급은 잉여금을 처분결의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성과급에 대한 잉여금처분 결의일인 주주총회일이 속한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2024년 12월 중에 직원의 성과급을 잉여금처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더라도 202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2025년 1월이나 2월 중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 서면1팀-482, 2007.04.13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않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시점이 귀속시기임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일반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인별 성과를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서면1팀-40(2005.1.12.)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성과급의 구분		귀속시기
①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② 이익처분절차없이 지급되는 성과급	계량적요소로만 측정하여 지급되는 성과급	계량적 요소 확정시점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모두 포함하여 지급되는 성과급	개인별 구체적 지급액 확정시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국회 문턱에 걸린 밸류업 세제혜택 법안

	내용	개정안	결과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미상정
배당소득세 세율 인하·분리과세	2000만원 이하 배당 증가금액분에 대해 14%→9% 세율인하 2000만원 초과 배당 증가금액분에 대해 최고세율 45%→25%로 인하	조세특례 제한법	미상정
상속세 체계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상속세· 증여세법	부결

화

계좌별 연말정산 세액공제

구분	연금저축	IRP	ISA
연 납입한도	1800만	1800만	2000만
세액공제한도	600만	900만 (연금저축 합산금액)	300만
소득세율	3.3~5.5 (단 수령 나이별로 상이)	3.3~5.5% (단 수령 나이별로 상이)	순이익 일반형 200만, 서민형 400만 초과금액엔 9.9% 분리과세 적용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의 범위

구분	수증자(받는 사람)	
	국내 거주자	국내 비거주자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모든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공제가능	공제불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과 소득세 세액공제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3.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6.5%)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3.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6.5%)
세액공제 가능 여부	○	×	○	○
각각 연 50만원 납입	66,000원 절세	-	66,000원 절세	82,500원 절세
각각 연 100만원 납입	132,000원 절세	-	132,000원 절세	165,000원 절세
각각 연 150만원 납입	132,000원 절세	-	132,000원 절세	165,000원 절세
최대 세액공제액	132,000원		297,000원	



직장에서 탄탄한 관계 만드는 법 ①

‘사람을 믿는 것과 일을 믿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말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무사시노 대표이사이자 [사람은 믿어도 일은 믿지 마라]의 저자 고야마 노보루입니다. 직원은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기는 것은 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는 업무를 챙기는 일환으로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데, 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원의 특징과 성격,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사장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야마 노보루 사장이 들려주는 [직원과 친밀하고 탄탄한 관계 만드는 법 6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사내외 관계 없이 직원들과 친밀하고 탄탄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입니다.

1. 면담을 늘린다

사장은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하고, 상사는 부하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첫째는 면담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은 면담을 잘 하지 않으며, 면담을 한다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연말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올 한 해 어땠는가?’라고 묻는 정도다.

1년에 2번, 1시간씩 면담을 한다면 10분의 면담을 12번 하는 것이 낫다. 그편이 훨씬 속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친밀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데도 적람직하기 때문이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공제 적용 가능함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준법규법인-71, 2024.06.12

질 의

-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질의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 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

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상속증여-636, 2023.12.26

질 의

- 행정구역 분리 조정으로 ○○리 새마을회 명의 토지를 ○○3리 새마을회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회 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881, 2024.06.26

질 의

-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약정사항은 소득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금액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높은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87, 2024.06.20

질 의

- '21.10.05. 신청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00억원 출자하여 조합의 000좌를 보유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를 투자
- '23.01.19. 상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양도차익 발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로 보유

질의

-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회 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한달 앞 다가온 13월의 월급... 출산지원금 등 결혼 양육 주거 공제 쓸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결혼·양육·주거·카드지출 관련 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달라진 공제 내역 및 절세 팁을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노인·장애인 보장용 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되고, 만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되며, 이 시기에 맞춰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 경력단절자 채용 세제지원 남성 추가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변경,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 추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은 모두 현행 유지, 신설·확대 안은 폐기됐다. 자영업자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안도 폐기됐다.

기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근로장려금(E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정요건 완화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 명의위장사업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화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간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은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국세청, 2025. 1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 신구 소매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11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 츠시설 운영업
2	여행사업	7	스키장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 업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 비스업
4	앰블런스 서비스업	9	수영장 운영업	※ 스터디카페는 '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 종에 해당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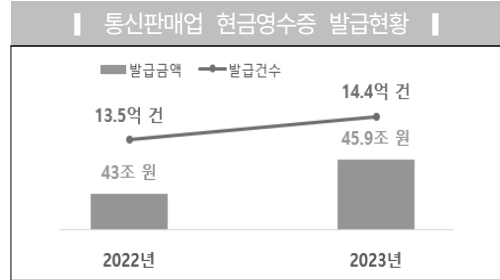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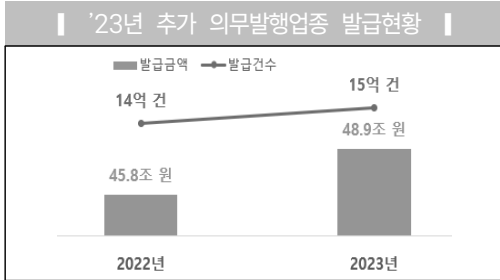
-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23년) 112개 (17개 ↑) → ('24년) 125개 (13개 ↑) → ('25년) 138개 (13개 ↑)



『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통계』

- '23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9조 원이며,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4억 건, 발급금액은 45.9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 '23년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건수는 46억 건, 발급금액은 167조 원 (전년 대비 발급건수 2%, 발급금액 7% 증가)



- '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 '25.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연 1천만 원 한도)
 - (근로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 ①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②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은 신용카드로, 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③ 거래대금 15만 원을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습니다.
 - 1) ('10년) 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 2) 의무발행업종: ('23년) 112개 (17개 ↑) → ('24년) 125개 (13개 ↑) → ('25년) 138개 (13개 ↑)

2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5.1.1.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5.14.)

□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참고자료실 → (16번)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발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 '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52, 523292, 524000)	47422	▶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여행사업 (630600)	75210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 630601)	75290	▶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앰블런스 서비스업 (851911)	86901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91111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앰블런스 서비스업 (851911)	86901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91111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	91112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스키장 운영업 (924304)	91122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	91131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영장 운영업 (924311)	91133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
볼링장 운영업 (924302)	91134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911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725000)	95110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930919)	96999	▶ 애완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스터디카페 (923102)	90212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3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1년) 2.3조 원 → ('22년) 2.6조 원 → ('23년) 2.7조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②) ■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및 공제세액 (가산세 제외)」을 차·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1년) 33조 원 → ('22년) 39조 원 → ('23년) 생산예정

4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②)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은행계좌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총 거래대금(30만 원)이 10만 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05년) 4.5억 건, 18.6조 원 → ('22년) 45억 건, 156.2조 원 → ('23년) 46억 건, 167.1조 원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4.6.)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처리

확인 신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 등록신청 → 업종선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여부 안내, 가맹점 가입 신청

○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

○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원 미만)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 (10만 원 이상)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경감
기 타 제재	▶ 미가맹 시 •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붙임 2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Q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¹⁾, 손택스²⁾(모바일), 국세상담센터³⁾(☎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 1)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2)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3)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1(비밀번호 설정) > 1(가맹점 가입)

**Q3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¹⁾, 손택스²⁾, ARS³⁾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 3)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1(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내역 입력 + # > 소득공제용(1번), 지출증빙용(2번)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화면 하단 자료실 > 검색창에 ‘스티커’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이미지 파일 조회 > 첨부파일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내려받아 사용

Q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Q6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064, 2021.01.25.)

Q7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Q10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기획재정부, 2024. 12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9. 1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르완다측은 '24.1.17.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24.11.19. 국내절차 완료 통보

르완다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 5개 기업 진출 / 대르완다 직접투자('23년 누적) 약9천9백만 달러

** ('21)10.9% → ('22) 8.2% → ('23) 8.2%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된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는 경우 르완다 국내세율 15% 적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 과세 허용

셋째,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되었다.

동 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어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0일 (금)	12월 23일 (월)	12월 24일 (화)	12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449.70	1450.30	1449.30	1453.60
일 본 엔 (JPY)	920.21	926.86	922.45	924.56
영 국 파 운 드 (GBP)	1811.84	1823.53	1816.48	1823.32
캐 나 다 달 러 (CAD)	1007.02	1009.92	1008.31	1012.54
홍 콩 달 러 (HKD)	186.58	186.58	186.52	187.15
위 안 화 (CNH)	198.20	198.45	198.51	198.81
유 로 화 (EUR)	1502.25	1514.19	1508.07	1511.53
호 주 달 러 (AUD)	903.74	907.45	905.09	906.97
싱 가 폴 달 러 (SGD)	1064.74	1069.23	1067.62	1070.0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1.76	321.72	322.78	323.96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4. 12

- 주요 내용 -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구 분	선임기한 ^{주1)}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 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감사위원회	3개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주2)}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주3)})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개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주2)} 감사 ^{주2), 주4)}
④ 유한회사	D + 45일		또는 감사반	

주1)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주2)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

주3)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주4)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회사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

1 외부감사제도 개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 출 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일정규모 이상	2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3가지 이상 해당 ①~④ 좌동 ⑤사원수 5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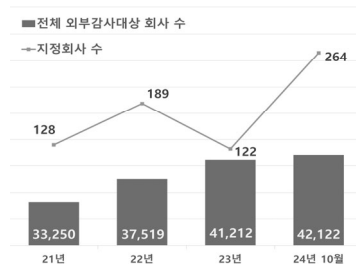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감사인 선임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사)

구 분	'21년	'22년	'23년	'24.10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3,250	37,519	41,212	42,122
지정회사 수 (선임기한·절차위반)	128	189	12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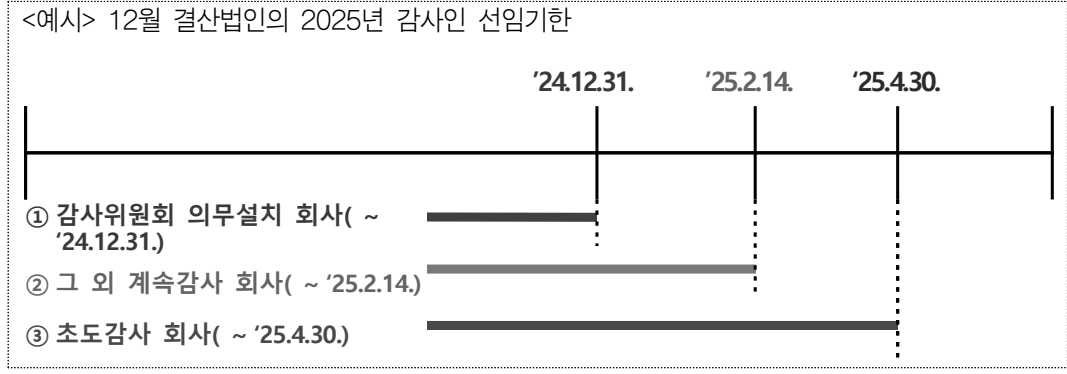


2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①선임기한, ②선임대상 사업연도, ③감사인 자격요건, ④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임기한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함
 - * ①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사례

- A사(12월 결산)는 '22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3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3.4.30. '가'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체결
 - '24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4.4.29. 감사계약을 체결
 - ➔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4.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② 선임대상 사업연도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

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사례

- B사는 '22년대형비상장회사 → '23년기타비상장사 → '24년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22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2~'24)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4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정하고, 3년('24~'26)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선위 개최 없이 ②1개 사업연도('24)에 대한 감사계약만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③ 감사인 자격요건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감사인 자격요건 위반사례

- C사는 상장을 위해 '23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4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
 - 예상과 달리 '24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지만,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회계법인과 '24사업연도 감사를 진행
 - ➔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④ 감사인 선정권자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사례

- D사는 '22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3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 합병으로 '23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4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되었으나, '23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①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②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5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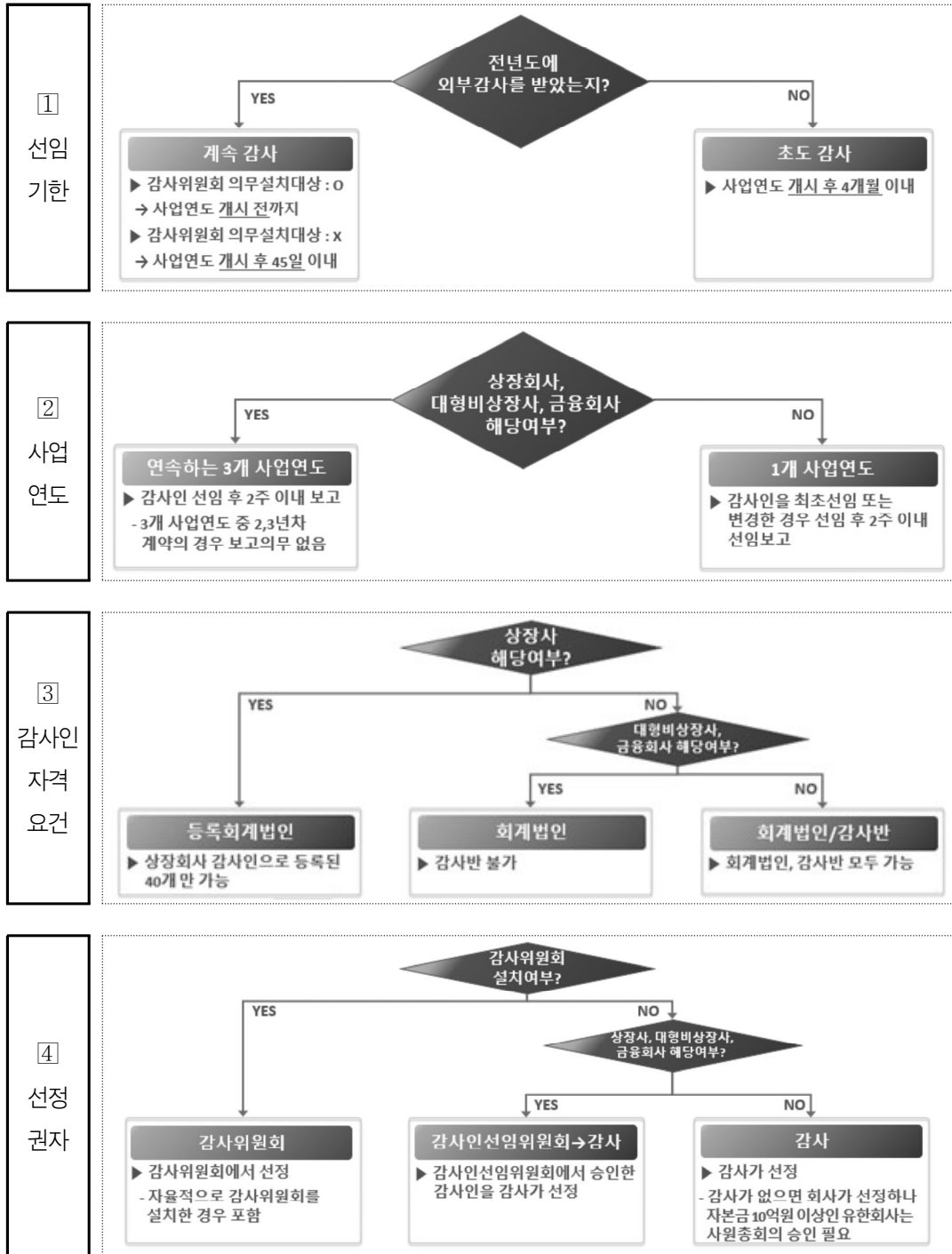
감사인 선임보고 위반사례

- 대형비상장회사인 E사의 감사는 '마'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1-'23)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
 - '24.2.10. '마'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
 - ➔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 위반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25.1월)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 / 7763)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

붙임 1 -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붙임 2 -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 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4.12.31.) 감사인 선임
 - ※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③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4.12.31.) 감사인 선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3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비상장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5.4.30.까지 선임
- ※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 가능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4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5.4.30.까지 선임
-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 혹은 6인으로 구성되며, 6인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

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항 내용 작성
 -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자료 게시(80번, 붙임(2))를 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 회사개항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하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항 정보를 다시 확인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

2025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4. 12

주요 내용

- 기업의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여 '24년말 시행 예정
 - * 「배당권자 先확정(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

-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4년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 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편, 투자자들은 올해 말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의 배당관련 공시 내용이나 상장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업보고서 개정 배경

- (개요) '23.1.31. 금융위·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법무부 등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이는 국내 기업의 기존 배당 관행*이 불합리하여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 * 「배당권자 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으로,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
-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①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②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배당절차 개선방안 개요



- (현황) 당국의 독려와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였고,
 - * 예)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12.31.)로 규정 →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전 공고
- 시행 첫해에 109개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아직 ①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②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함으로써('24년말 시행),
 -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 개정내용 설명

- (현행)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크게 다음 3가지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 ① (배당정책)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항목 구분 없이 기재
 - ② (배당지표) 최근 3사업연도 중 배당금총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표에 따라 기재(부가 설명은 별도로 기술)
 - ③ (배당이력) 연속배당기간, 최근 3년·5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과거 배당에 대한 이력을 표에 따라 기재(부가 설명은 별도로 기술)

- (문제점) 서식이 지정된 표에 따라 기재토록 한 항목(②,③)은 대부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①)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 (사례)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개정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①)에 다음과 같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②,③은 현행과 같음)
 - (정관개정 여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 (실제 이행 여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5-6-1조(배당) 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제5-6-1조(배당) ① 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작성예시)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25년중 정관개정 추진 예정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작성예시)

구분	결산월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 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비고
40기 결산배당	2021. 12월	X	-	-	-	
41기 결산배당	2022. 12월	O	2023. 3.27.	2022. 12.31.	X	
42기 결산배당	2023. 12월	O	2024. 3.27.	2024. 4.3.	O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3 투자자 유의사항

-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①배당 예측성 제공을 통한 배당투자 활성화, ②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에 따른 해외 투자자 참여 확대 ③배당락 분산에 따른 연말 시장 변동성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 기존처럼 연말기준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배당권자确定为 위한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①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②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여,
 -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소 전자공시 웹사이트(kind.krx.or.kr)에서도 링크 제공 중)

4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 (당부사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
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시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예 : '25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붙임3]) 안건을 상정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
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입니다.

붙임 1 - 사업보고서 작성예시

6. 배당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본 예시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 공시대상회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5-6-1조 ①에 따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음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환원을 위해 3년마다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
3년(2024년도~2027년도)간 적용될 배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간 최저 배당금을 주당 500원으로 정함
- 매년 결산배당 1회, 분기배당 3회를 모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결산배당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함
- 분기배당 기준일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함
- 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이 하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기준일 전
에 미리 공시함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41기 정기 주주총회('23.3.22.)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제42기 결산배당부터 적용 가능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제42기 결산배당부터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계획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 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비고
제41기 결산배당	2022.12월	○	2023.3.22.	2022.12.31.	X	
제42기 결산배당	2023.12월	○	2024.3.22.	2024.2.29.	○	주식 참고
제43기 결산배당	2024.12월	○	2025.3.24.	2025.3.31.	○	

주) 당사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로서, 제42기 결산배당과 제43기 분기배당의 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4.2월말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4.2.6. 결산이사회(상법\$447의3)에서 배당(안) 결의 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이행하였으므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의 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요 배당지표에 관한 사항(현행과 같으며, 예시 생략)

5. 과거 배당이력에 관한 사항(현행과 같으며, 예시 생략)

붙임 2 -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현황

□ (정관정비 현황) 유가·코스닥 상장기업 중 42.3%(1,008개사)*가 정관상 결산 배당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날'로 설정 가능

* 이 중 '24년 이전 정관정비를 완료한 곳은 781개사, '24년 주총에서 정비한 회사는 227개사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유가	코스닥	합계	비율
정비완료	339	669	1,008	42.3
유형 1	301	553	854	35.9
유형 2	1	0	1	0.0
유형 3	34	30	64	2.7
유형 4	3	86	89	3.7
미정비(유형 5)	452	921	1,373	57.7
합계	791	1,590	2,381	100.0

* '24.3월까지 정기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12월 결산법인 기준

- 주) [유형 1] 매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 공고(표준정관)
 [유형 2] 결산기 말일이 아닌 특정일을 배당기준일로 지정
 [유형 3]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배당기준일을 같은 날로 함
 [유형 4] 원칙: 배당기준일=결산기 말일, 예외: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 공고
 [유형 5] 매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행사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지정

□ (이행 현황) '24년 이전 정관정비를 완료한 781개사* 중 '24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기업은 321개사(41.1%)이며,

* '24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한 227개사는 '25년부터 이행 가능

- 이 중 109개사(34.0%)가 실제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이행하여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

<2023 사업연도 결산배당시 절차개선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유가	코스닥	합계	비율
정관정비	84	25	109	34.0
+ 유배당	43	169	212	66.0
합계	127	194	321	100.0

붙임 3 -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필요사항

- (결산배당)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p>제45조(이익배당)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45조(이익배당) ① (좌 동)</p> <p>② 이 회사는 <u>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 <u>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월 ○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u>.</p>

- (중간배당)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p>제45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월 ○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제45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u>이사회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u></p> <p>② 이 회사는 <u>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 <u>이사회에서 중간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u></p> <p>※ <u>중간배당기준일은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u></p>

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월 ○일 24시 현재 주주명부
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 설정 필요

붙임 4 - 주요 Q&A

1. 회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정관 내용은?

-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은
 -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정비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
 - ① (사업년도 말일 ≠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므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로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함
 - ② (의결권 기준일 ≠ 배당기준일)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였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함
 - ③ (先배당액 확정 및 後배당기준일 설정)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의 날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하여야 함

2. 주식배당 회사의 경우, 결산배당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총 종결 시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시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함
 - * 상법 제462조의2 제4항 : (취지) 주총 개최 중에 출석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변동하는 문제 등 방지
- 금전배당만 실시하는 경우, 본 개선방안에 따라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

- 여 운영할 수 있으나
-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전의 같은 날로 정할 수 있으나, 양 기준일이 반드시 같은 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배당 기준일과 별개로 금전배당 기준일은 주총 이후로 정하는 것도 상법상 허용됨
 - 다만, 그러한 경우 주식배당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도 금전배당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실무일정은?

- 개선방안에 따른 배당절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 ①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배당절차 관련한 정관 내용을 정비하고,
 - ② 해당 정관에 따라 ‘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운영해야 함

- 이에 상장회사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와 배당기준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해당 정관을 근거로 2025년 중 중간배당부터, 2026년 결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